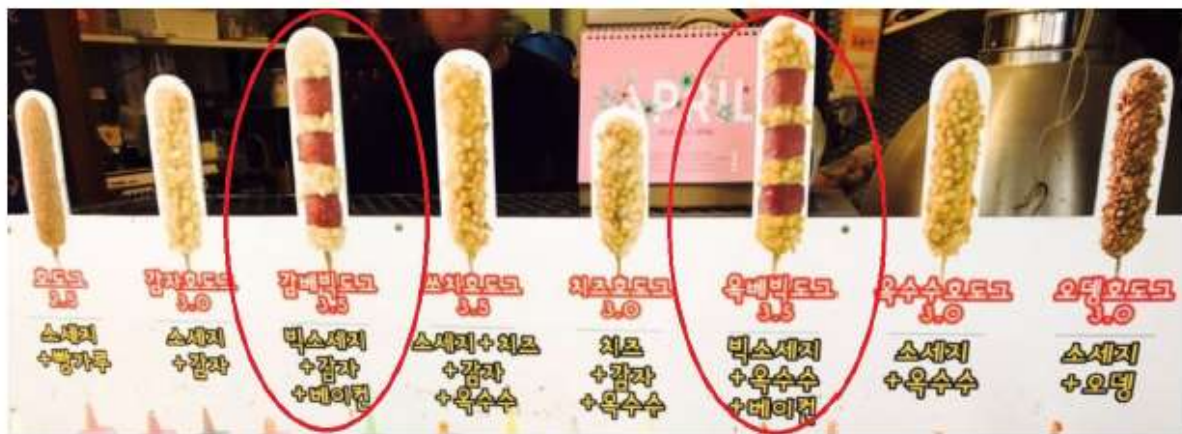


핫도그 상품명칭 빅도그 - 상품의 출처표시 아님 + 보통의 성질표시로서 권리범위 불속:

특허법원 2020. 7. 10. 선고 2020허1625 판결



확인대상표장을 단순히 '크기가 큰 핫도그'라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한 것으로 보

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핫도그 제품과 관련하여 핫도그의 재료·성질을 나타내는 접두어와 핫도그 그 자체를 의미하는 덕/독/도그의 결합이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 '빅도그'는 일반 수요자들이 'Big'과 'Dog'라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로 조합된 'Big Dog'의 한글 음역이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보인다.

이중 'Big'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 및 확인대상표장의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인 '핫도그' 등의 음식과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 '크기가 크다'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며, 'Dog' 부분은 위 '핫도그'와 관련하여서는 그 제품인 '핫도그'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들은 확인대상표장을 '크기가 큰 핫도그'로 직감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앞서 인정한 핫도그와 관련된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빅도그'는 수요자들과 동종 업자들 사이에서 '크기가 큰 핫도그'라는 의미로 통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빅도그' 명칭은 비교적 크기가 큰 핫도그에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의 경우 이를 따로 사용함이 없이 항상 원재료를 나타내는 '감베(감자+베이컨)', '옥베(옥수수+베이컨)와 함께 사용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수요자들에게 '크기가 큰 핫도그'와 같이 직

감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사용한 실사용표장들은 간판이나 출입문 유리창 등에 사용된 'HODOGS' 또는 '호도그'에 비하여 메뉴판에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게 표기되어 있고, 그것도 8개의 핫도그 제품 중 일부인 2개 제품에만 원재료 약칭과 함께 표기하고 있을 뿐이어서 수요자가 위 표시를 'HODOGS' 또는 '호도그'의 서브 브랜드(sub brand)나 피고 제품에 관한 별도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이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면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전체적으로는 '크기가 큰 핫도그'로 직감될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실제 거래사회에서도 확인대상표장은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기에 적합한 표장도 아니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은 특별한 도안화 없이 같은 크기의 한글을 나란히 배열하고 있어 표장의 외관상 구성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심결 당시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그 품질, 효능, 용도,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20. 7. 10. 선고 2020허1625 판결

지재권분쟁, 침해대응/감정,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One-Stop 대응, A~Z 수행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